금융위원회	보도 자료	금융감독원

보도시점 2024.11.29.(금) 조간 배포 2024.11.27.(수) 18:00

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

- '혁신적 사업모델'과 '포용금융'에 기반한 '지속가능성' 중점 심사 -

▲ (**중점 심사기준**) **종전** 인터넷전문은행 **심사기준**과 **연속성**을 유지하되, 기존 3社 **성과**, **금융권 경쟁도 평가결과 등 감안 중점 심사기준 마련**

❶ (**자금조달의 안정성**) **은행권 자산규모** 및 기존 3社의 **자본금** 수준을 감안한 **충분한 자본조달 가능성**

❷ (**사업계획의 혁신성**) **기존 금융권**에서 **공급**이 **잘 이루어지지 않는 분야**의 **'혁신적 사업모델' 제공**

❸ (**사업계획의 포용성**) **차별화된 고객군** + **지역금융 기여도**

❹ (**실현가능성**) **기술평가 강화** + **계획이행 담보 위한 인가조건 부과**

▲ (**추진일정**) **인가설명회** 개최('24.12.12일) → **예비인가 신청 접수**('25.1분기) → 예비인가 **심사 및 결과 발표**('25.상반기, 잠정)

정부는 2023년 7월 5일 **은행산업 경쟁촉진**을 위해 시중은행·지방은행·**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**를 **추진**하겠다고 **발표**(「은행권 경영·영업관행·제도 개선 방안」)한 바 있습니다. 특히, **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**에 대해서는 현행 **법령상 요건**과 함께 기존 인터넷전문은행 **3社의 성과 및 안정성 등** 제반 상황을 **감안**하여 **신규인가**를 **추진**하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.

그간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의 **도입 이후 성과**와 **보완과제**를 **평가**('24.6월, 금융연구원)하는 한편, **금융권**의 **중소기업·개인신용 대출시장 경쟁도 평가**를 실시('24.11월)하여 **경쟁촉진과 금융공급 확대**가 **필요한 분야**를 **점검**하였습니다.

이를 토대로 **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**은 「**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**」를 마련하여 2024년 11월 27일 **제20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**에 **보고**하였습니다.

이번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은 **종전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기준***과의 **연속성**을 **유지**하는 한편, **인터넷전문은행 도입성과**와 중소기업 대출시장 등 관련 **금융산업 경쟁도 평가결과**를 **감안**하여 **중점 심사 방향과 심사기준 등**을 **마련**하였습니다.

* 「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세부추진방안」('18.12월)
  ⅰ) 기본적으로 은행법령상 인가 심사기준 적용
  ⅱ)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취지 등을 감안하여 사업계획의 혁신성·포용성 등 평가

이에 따라 ❶**자금조달의 안정성**과 함께 **사업계획**의 ❷**혁신성** 및 ❸**포용성**, 그리고 ❹사업계획의 **실현가능성**을 **중심**으로 평가할 계획입니다.

우선, **자금조달**의 **안정성**과 관련하여 **기존 3社**의 **자본금 수준**을 **감안**하여 **충분한 자본력**을 갖추고, **안정적**으로 **시장**에 **안착**할 수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심사하겠습니다. 기본적으로 **대주주**(한도초과보유 주주)의 **자금공급 능력***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, **주요 주주**가 제출한 납입확약서 등을 토대로 **자금조달 방안**이 **실현 가능**한지도 점검하겠습니다.

* ⅰ) 대주주가 자체자금 등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지분율을 유지 가능한지 여부
  ⅱ) 대주주 제재 등으로 자금확보에 제약 발생시 신청인의 대응계획 등

사업계획의 **혁신성**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상 **중점 고객군 대상 자금공급**을 위한 '**신용평가모형**'이 **혁신적**인지 여부를 평가하겠습니다. 이와 함께 차별화된 금융기법 등을 통해 **기존 금융권**이 부족하게 제공하고 있는 **분야***에 대한 '**혁신적 사업모델' 제공 여부**도 평가할 계획입니다. 단순히 아이디어 차원의 새로운 서비스의 제공이 아니라 혁신적 사업모델을 통한 실질적 서비스 제공으로 **금융시장 및 산업 발전**에 **기여**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심사하겠습니다.

* (예)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활성화의 필요성이 높고, 금융산업 부가가치 제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

또한, **사업계획의 포용성**에 대한 평가를 **강화**하겠습니다. **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**은 **기존 금융권**에서 **자금공급**이 **충분치 못했던 분야**에서 그 **역할**을 **수행**할 필요도 있습니다. 이를 감안하여 종전과 같이 **서민금융 지원, 중금리 대출 공급 계획 등**에 대한 **평가**는 **유지**하되, 기존 금융권의 주된 고객군이 아닌 '**차별화된 고객군**'을 목표로 한 **사업계획**의 **제공**과 그 **실현가능성**을 **심사**하겠습니다.

아울러, 금융권 경쟁도 평가결과('24.11월)를 고려하여 금융수요 대비 금융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**비수도권 중소기업**(소상공인 포함)에 대한 **자금공급계획***도 **평가**하겠습니다.

* 차별화된 고객군 및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계획의 연도별 목표치와 향후 5년간의 구체적 이행계획 및 해당 대출 관련 건전성 관리계획 징구 등

마지막으로 사업계획의 **실현가능성**에 대해 **심사 단계**에서도 **면밀히 살펴** 보겠습니다. 인가 심사의 공정성·투명성 확보를 위해 운영하는 민간 '**외부평가위원회**'에 전문가로 구성된 **기술평가 분과**를 **신설**하고, 사업계획의 타당성·실현가능성과 신용평가모형의 구현가능성 등을 꼼꼼하게 점검하겠습니다. 또한, **제출한 사업계획**(자금조달계획 포함)의 **이행**을 **담보**하기 위한 방안으로 **은행법령에 따른 인가조건***을 **부과**할 계획입니다. 인가 이후 영업과정에서 제출한 계획대로 **이행하지 않을 경우 은행법령상 은행업무**(겸영·부수업무 또는 본질적 업무 등)의 일부를 **제한**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계획의 이행도를 제고하겠습니다.

* (은행법 제8조제4항) 금융위원회는 인가를 하는 경우 금융시장의 안정, 은행의 건전성 확보 및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
이번 신규인가 심사기준에 따른 **예비인가 신청서 접수**는 **내년 1분기중 진행**할 예정입니다. **구체적인 접수일정**은 12월 예정된 **인가설명회***에서 희망 사업자 대상 **의견수렴**을 거쳐 **확정·발표**할 계획입니다. 예비인가 **신청서 접수 이후**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**내년 상반기 중** 예비인가 **심사 결과** 발표가 예상됩니다.

* 인가설명회 일시 / 장소 등은 별도 안내 예정(보도참고자료 배포)

※ [별첨]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

담당 부서	금융산업국 은행과	책임자	과 장	이진수 (02-2100-2950)
		담당자	사무관	김경호 (02-2100-2953)
	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	책임자	국 장	정우현 (02-3145-8020)
		담당자	팀 장	김지웅 (02-3145-8022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붙 임	주요 QA

1.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추진하는 이유는?

□ 인터넷전문은행 **신규인가**는 은행산업 내 **신규 플레이어 진입**을 통해 **금융비용 및 서비스 측면**에서 **국민**들이 실질적으로 **체감**할 수 있는 **경쟁**을 **촉진**하기 위해 **추진**하고 있음

2. 종전과 달리 인가 개수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, 몇 곳 신규인가 예정인지?

□ 실제 **인가 개수**는 **심사**를 거쳐 **결정**할 사항임

○ **충분한 자본력**과 **건전성, 혁신적인 사업계획** 등을 중심으로 **법령상 요건**에 대한 엄격한 **심사**를 거쳐 **인가여부**를 **결정**할 계획

3.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일정은? 일괄 접수인지?

□ **언론 등**을 통해 **확인**된 바에 따르면 현재 **여러 컨소시엄**에서 인터넷전문은행 **신규인가**를 **추진중**인 것으로 알고 있음

○ 이를 고려하여 이번 예비인가 심사는 **종전과 동일**하게 **일괄적**으로 **신청서**를 **접수**하고 **심사**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임

□ **구체적인 신청서 접수 일정 등**은 12월 설명회에서 희망사업자 대상 **의견수렴**을 거쳐 **확정 및 발표**할 계획으로,

○ 대략 **내년 1분기 중**으로 **예상**하고 있음

4. 예비인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있을 경우 본인가 및 영업개시 시점은 언제로 예상하는지?

□ **현재로서는** 본인가 및 영업개시 시점에 대해 **알 수 없음**

○ 예비인가 심사기간(2개월 이내), 예비인가 이후 사업자의 준비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
5. 자금공급 능력 중점심사 대상인 대주주의 범위는?

□ 기본적으로 은행법 및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른 **한도초과보유 주주***를 의미함

* ICT비금융주력자 포함 인터넷전문은행 주식 10% 초과보유 주주

6. 기존 금융권이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에서 혁신적 사업모델 제공 여부를 평가하겠다고 했는데,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를 의미하는지?

□ **특정 분야**에 대해 **언급**하는 것은 신규진입 사업자의 **사업계획 구상 등**에 **영향**을 미칠 우려가 있는 바, **신중할 필요**가 있음

□ 다만, **신규인가**는 **금융비용·서비스 측면**에서 **국민**들이 실질적으로 **체감**할 수 있는 **경쟁**을 **촉진**하기 위해 **추진 중**이며,

○ **차별화된 금융기법 등**을 통해 **금융산업 발전**에 **기여**할 수 있는 **새로운 서비스**의 **제공**이 필요하다고 생각함

7. 기존 금융권이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에서 혁신적 사업모델 제공 여부를 평가하겠다고 했는데, 신규 인터넷전문은행이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보는지?

□ 인터넷전문은행은 **금융과 ICT간 융합**을 통한 **금융서비스 혁신** 및 **경쟁촉진**으로 **금융소비자 편익**을 **증진**하기 위해 도입하였으며,

○ **ICT 기업 등**을 비롯한 혁신성 있는 경영주체의 **진입**을 **촉진**하고자 시중은행과 달리 **대주주 규제 등 진입장벽**도 **완화**하였음

□ 이러한 측면에서 신규 인터넷전문은행이 **다양**하고 **창의적인 사업모델**을 **제공**하여 **기존 금융관행**의 **혁신**을 유도하기를 **기대**함

8. 신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기존 3社와 같이 중저신용자 대출비중 목표치를 요구하지 않는 것인지?

□ 이번 심사에서도 종전과 동일하게 사업계획의 포용성 측면에서 **서민금융 지원** 및 **중금리대출 공급 계획 등**을 **평가**할 예정

○ 단, **종전 심사**에서도 금융당국이 **중·저신용자 대출비중**과 관련된 **목표치**를 **제시**하지는 **않았으며**,

※ 기존 3사가 인가시 제시한 중저신용자 자금공급 계획이 영업과정에서 충분히 실현되지 않아 '21.5월부터 금융당국과 함께 취급계획을 마련·이행중

- **이번 심사**에서도 동일하게 신청인이 제출한 **사업계획**을 **토대로 평가**할 계획임

9. 기존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당시와는 다르게 사업계획 미이행에 대한 인가조건을 부과하였는데, 이는 과도한 것 아닌지?

□ **기존 3社**는 인가 신청시 금융정보와 기타 대안정보를 결합한 **신용평가모형 고도화**와 **중·저신용자 자금공급 계획**을 **제출**하였음

○ 그러나, **제출한 사업계획**의 **실효성**을 **담보**하기 위한 **수단**이 **부족**했던 측면이 있음

□ 이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**사업계획**의 **이행**을 **담보**하기 위한 수단으로 **인가조건 부과**를 **검토**하였음

○ 다만, **금융당국**이 관련 **목표치 등**을 **제시**하는 것이 아니라 **신청인**이 **제출한 사업계획**대로 **이행**토록 하기 위한 것임

10.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, 인력·영업시설 등 관련 배점을 하향한 이유는?

□ **법령상 요건**을 **당연히 충족**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**배점**을 **부여하지 않거나 하향** 조정한 측면이 있음

○ 다만, 배점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라도 해당 **요건**을 **충족하지 못한다면 인가 결격사유**에 해당할 수 있음